

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. 1. 1.부터 시행됩니다.

♪ ‘고향사랑 기부금’으로 농업·농촌을 두 번 응원해 주세요! ♪

한 번은 농촌지역 기부로 ~
또 한 번은 농·축산물 답례품으로 응원해 주세요 ~

내용

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와 지역주민 복리 증진,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
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**다른 지자체에 일정액(연간 500만원 한도)**을 기부하는 제도

시행일

2023. 1. 1.부터 시행

기부 주체

개인

* 기부 제한 : 지역주민, 법인, 이해관계자, 차명 또는 가명기부

기부액

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(지방자치단체 기부금 합산)

기부금 사용 분야

해당 지자체의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에 사용

*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, 청소년 보호·육성, 문화·예술·보건 증진,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,
기타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

세액 공제

소득에 상관없이 **기부금액에 따라 구간별 차등 세액공제**

* 10만원까지는 기부금 전액, 10만원 초과부터는 16.5% 공제

답례품 제공

기부금의 30% 한도에서 기부받은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**지역특산품**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

* 관할구역에서 생산, 제조된 물품, 관할구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품목
(조례로 규정), * 제외품목 : 현금, 귀금속, 유가증권 등

참고

최초 10만원 기부시엔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

* 세액공제 10만원 전액 환급, 3만원 답례품 제공

